

제9장 평생교육

제40조 (교육과정의 연계운영)

-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, 4년제 대학,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연계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1조 (공개강좌)

- ① 우리 대학 학생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-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2조 (비정규, 특별과정 운영)

- ① 우리 대학에는 3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.
-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42조의2 (주문식 교육과정의 운영)

- ① 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3조 (시간제 등록제 운영)

- ① 우리 대학에서는 비정규 성인학습자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 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간제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고, 선발방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③ 시간제 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
- ④ 시간제 등록생은 우리 대학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
- ⑤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⑦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들의 수업방법은 강의실 표준수업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

한 수강생들의 편의와 질적향상을 목표로한 사이버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수업, 주말 및 특별기간 집중수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- ⑧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나 집중수업의 경우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⑨ 독자적 모집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의 수강과목명과 학점수가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과 다를 경우 성인학습자의 학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점인정 표준교과명과 학점수로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⑩ 기타 시간제 등록제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4조 (전공심화과정)

-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-2년 이내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동일 학과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.
-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,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④ 산업체 경력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은 해당 대학의 동일 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.

제44조의2 (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)

- ① 전공심화과정의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, 입학사정, 자체감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② 의장(교학처장) 1인을 포함하여 학과의 교수, 산업체인사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% 이상 포함한다.
-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4조의3 (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)

- ①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의 운영 및 연구를 위해 전공심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둔다.
- ②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산업체 인사를 50% 이상 포함한다.
- ③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5조 (산업체위탁교육)

-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로 이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선발기준은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,